

일상감사 대상 및 처리절차

□ 관련근거

- 감사규정 시행내규 제20조 ~ 27조

□ 일상감사 대상

1. 다음에 해당하는 기본사업계획·주요방침 수립 및 중요한 변경사항
가. 「이사회 운영 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이사회 부의 및 심의사항
나.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외부 단체, 개인 등과의 협약 체결, 양해각서 교환 등에 관한 사항
라. 소송사무 처리 내규에서 정하는 중요한 소송과 화해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전용·이월 및 예비비 지출과 자금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매 건당 1,000,000원을 초과하는 업무추진비와 행사 등 잡비의 지출
4. 매 건당 5,000,000원을 초과하는 가지급금(전도자금·선급금·개산금 포함)의 지급
5. 추정가격 10,000,000원을 초과하는 제 계약의 체결 방침에 관한 사항
6. 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위임전결 내규상 본부장 이상 결재를 필요로 하는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7. 결산, 가결산과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8. 회계단위의 설정과 폐쇄
9. 그 밖에 상임감사가 일상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일상감사 처리절차

